

시행세칙 제4조 1(장학금 지급대상)

개정 내역

1) 2009년 7월 9일 개정

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다.

2) 2010년 7월 8일 개정

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모 또는 학생이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8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.

3) 2012년 1월 13일 개정

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.

4) 2012년 3월 26일 개정

제4조의 1(장학금 지급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
(단,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전·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)와 (2012년 3월 26일 개정)

②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 (지급연도 3월 1일 기준)등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면·동(하일면· 사천시 동금동·선구동·향촌동·동서금동·벌리동)에 거주하는 하이면 출신자(본적지 기준)로서 다음과 같다.

5) 2014년 1월 22일 개정

제4조의 1(장학금 지급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
(단,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전·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)와 (2012년 3월 26일 개정)

②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 (지급연도 3월 1일 기준)등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면·동(하일면· 사천시 동서동·선구동·향촌동·동서금동·벌용동)에 거주하는 하이면 출신자(본적지 기준)로서 다음과 같다.

6) 2016년 2월 23일 개정

제4조의 1(장학금 지급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
(단,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전·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)와

②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 (지급연도 3월 1일 기준)등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남동발전(주)삼천포본부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면·동(하일면·사천시 동서동·선구동·향촌동·동서금동·벌용동)에 거주하는 하이면 출신자(본적지(제적등본 기준) 중 이사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2016년 2월 23일 개정)

7) 2017년 2월 7일 개정

제4조의 1(장학금 지급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
(단,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전·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)와

②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 (지급연도 3월 1일 기준)등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남동발전(주)삼천포발전본부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면·동(하일면·사천시 동서동·선구동·향촌동·동서금동·벌용동)에 거주하는 하이면 출신자(본적지(제적등본)기준) 중 이사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2017년 2월 7일 개정)

8) 2017년 3월 20일 개정

제4조의 1(장학금 지급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
(단,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전·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)와

②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 1일 기준)등재되어 있는 자[본적지(제적등본) 기준]중에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일면·사천시(동서동·선구동·향촌동·동서금동·벌용동)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2017년 3월 20일 개정)

9) 2020년 4월 17일 개정

제4조의 1(장학금 지급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(지급연도 3월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로 각 호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(단,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전·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)

[본 개정안 제4조의 1의 ②항 삭제 안은 2020년 4월 17일 개정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]

10) 2022년 4월 20일 개정

제4조의 1(장학금 지급대상)

①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하이면에 주민등록상 5년 이상(지급연도 3월 1일 기준) 연속으로 등재되어있고 실제로 기거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로 각 호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(※ 매 1년 중 8개월 이상 기거를 ‘실제로 기거한다’하고 정의함.)

단,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3개월 이내의 전·출입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)
(2022.04.20.개정)

※ ‘거주하다’와 ‘기거하다’ 비교[표준국어대사전]

거주하다	기거하다
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.	일정한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따위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.